

ICC모델 턴키 계약의 쟁점에 관한 연구

-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를 중심으로 - *

김 경 욱**
김 대 환***

-
- I. 서 론
 - II. 턴키 계약 및 ICC 모델 계약서의 일반적 고찰
 - III. 턴키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즈니스적 쟁점
 - IV. 턴키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 V. 결 론

주제어 : 턴키계약, 플랜트수출,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 본 논문은 2011년 한국무역상무학회 논문공모전 발표 논문임
**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최근 턴키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건설공사계약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보통의 건설계약에서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분리되어 존재하였으나 턴키 계약에서는 이를 한 공급자가 수행하는 계약이다. 턴키 계약 방식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현재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턴키 계약 방법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이다. 중동건설시장에 진출하여 국제적인 계약 방식을 접하면서 '75년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 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제정하였으며, 77년 최초로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 공사에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말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UAE에 원자력발전소 수주하는 등 턴키방식의 수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본고에서는 ICC에서 제공하는 모델계약서를 기준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턴키 계약과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즈니스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ICC 모델 계약서¹⁾는 구매자와 공급자를 비롯한 계약의 각 당사자들에게 계약서의 표본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턴키 계약 중에서 플랜트의 수출을 그 범위로 삼고 있으므로 본고의 연구 범위도 이에 따른다.

표준 계약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유럽법제에서 표준계약조건의 유효성에 대하여 형평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연구²⁾가 있었으며, 턴키 계약과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FIDIC의 약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턴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근 소개된 ICC 모델 계약서를 중심으로 연구함에 따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둘 수 있다고 하겠다.

1) ICC,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편의상 본고에서는 ICC모델계약서로 통칭한다.

2) 김재성, 유럽법제에서 형평성 원칙에 따른 표준계약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소고,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5,

3) 최명국, FIDIC의 EPC/Turnkey 프로젝트용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학회, 2002.8, /최명국, FIDIC의 DBO 프로젝트용 표준계약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5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범위는 ICC 모델 계약서를 중심으로 하였다. 많은 거래에서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ICC 모델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무역산업에 있어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턴키 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턴키 계약을 새로 시도하고자 하는 공급자의 입장이나, 구매자의 입장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 턴키 계약 및 ICC 모델 계약서의 일반적 고찰

1. 턴키방식을 통한 플랜트 수출의 의의와 특성

플랜트란 턴키 계약 등 플랜트 공급계약의 목적물로서 대외무역법에서는 산업설비라는 이름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장치 및 대통령령⁴⁾이 정하는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상의 정의에 따르면 산업설비수출은 외국에 공장 내지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자재와 이에 따른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설비수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거래 건당 거래 계약금액이 대규모이다. 플랜트 수출은 일반 수출과는 달리 사업규모가 대규모이어서 거래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둘째, 계약 체결일로부터 대금회수 시까지 장기간 소요된다. 따라서 대금 회수나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계약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플랜트 수출은 국가 간의 경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47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설비가 일괄수주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철강구조설비 2. 수상구조설비 3. 공해방지설비 4. 용수처리설비 및 해수담수설비 5. 냉동 및 냉장설비 6. 공기조화설비 7.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8.송유설비 9.장치식운반 하역설비 10.장치식건설용설비 11.시험연구설비

제협력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UAE 원자력 발전소 수주 시에 우리나라와 UAE의 정치적 경제적인 협력증진을 그 장점으로 내세웠던 사실에서도 턴키계약이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 턴키방식을 통한 플랜트 수출이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

턴키방식을 통한 플랜트 수출에 대하여 각 선진국에서는 다각도의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⁵⁾ 턴키 계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플랜트 수출은 수출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물품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 또는 장치 등의 hardware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software가 결합된 생산단위체로서의 종합수출을 의미한다.⁶⁾

따라서 거래되는 금액이 대규모이고 완성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수출국과 수입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수출국에 미치는 효과로써 부가가치율 및 외화 가득률이 높고,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써 자원소비효율을 높인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플랜트 수출은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여서 지속적인 수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수출국에 장점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수입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수입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고용증대와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한다는 데 있다.⁷⁾

3.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 형태와 턴키방식의 장점

턴키방식을 통한 플랜트 수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건설공사의

5) FIDIC(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1995년 디자인빌드와 턴키 계약 공용으로 Orange Book을 처음으로 발간한 이래, 1999년 플랜트와 디자인빌드를 위한 Yellow Book과 EPC/턴키 계약을 위한 Silver Book을 구분하여 새로이 제정하였다. FIDIC가 제공하는 각각의 표준계약 양식은 누가 설계를 제공하는가, 물량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리스크를 지는가에 따라서 구분이 되며, 턴키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가 턴키 계약자에게 할당된다. FIDIC 에 대한 상세 내용은 최명국, FIDIC의 DBO 프로젝트용 표준계약조건에 관한 연구, 2010.5, 한국무역상무학회 등의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6) 오원석, 최신 국제비즈니스 계약, 삼영사 2011, 171면

7) 이춘삼, 최신 무역관계법, 2008, 145면

발주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 분리발주 형식(Design-Bid-Build, DBB)으로 설계와 시공이 분리 발주 되며, 설계완료 후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두 번째는 CM 방식으로(Construction Management, CM) 구매자(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전문조직이 프로젝트 수행을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건설관리 조직이 프로젝트 관리만을 전담하는 경우(CM for free)와 시공을 겸하는 경우(CM at Risk)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구매자(발주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턴키 방식(Design-Build, DB)에서는 설계와 시공의 일괄 발주된다. 따라서 단일조직에 책임을 위임하게 된다.⁸⁾

표 1. 건설 공사의 계약 방식⁹⁾

계약 방식	내용	비고
전통적 분리 방식 (Design-Bid-Build, DBB)	설계와 시공 분리 발주, 설계 완료 후 공급자 선정	
CM 방식 (Construction Management, CM)	건설관리 조직 운영, 구매자의 대리인	CM for free CM at Risk
턴키 방식 (Design-Build, DB)	설계와 시공 일괄 발주, 단일 조직에 책임 위임	

턴키방식에서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이 단일 공급자에게 위임됨으로써 이러한 계약 하에서는 한 공급자가 설계와 시공 또는 운영등과 같은 서비스까지 공급해야 하므로 선진 기술과 자본을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제공함으로써 타 건설공사 방법과 비교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한 공급자에게 모든 계약을 위임함으로써 관리가 쉽고, 위험부담이 최소화 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8) 본 고에서는 턴키(Turnkey)와 디자인 빌드(Design-Build)를 같은 의미로 사용함

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3면 표3 인용

4. ICC model 계약서의 개괄적 검토

플랜트 수출 계약은 공급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서 FOB 형 계약과 턴키형 계약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기계의 공급과 설치에 필요한 지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후자는 플랜트의 설계, 기계의 조달, 현지 설치와 건설,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후자는 공급자의 업무 범위의 광협에 따라 기계, 자재의 구매도 공급자가 담당하는 full turnkey 와 구매자가 이를 구입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하면 공급자가 조립과 설치만을 담당하는 semi turnkey로 구분된다.¹⁰⁾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이 중에서도 플랜트, 즉 산업설비 수출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semi turnkey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full turnkey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건설하고 다리를 놓는 등의 full Turnkey 에서는 공급자(계약자)가 해당 작업의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하지만 플랜트 수출계약의 턴키 계약에서 공급자의 주된 의무는 설비의 공급과 구매자가 설치와 시운전 등 설비 검사를 실시할 시에 구매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과 완성된 설비가 사전에 보증한 특정한 이행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설비의 특정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장을 하여야 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다른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달라지는 첫 번째 차이는 semi turnkey 계약의 실질은 공급자가 설치와 시운전, 그리고 완성에 대한 보증 등에까지 관여하는 건설계약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플랜트 수출을 위한 턴키 계약의 주된 부분은 실제로 이 계약은 설비 판매 계약에 중심을 둔다. 즉, 이 계약의 주된 의무는 설비의 판매이고, 설치 및 시운전, 완성에 대한 보증 등은 공급자의 부차적인 의무에 불과하다. 또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은 full turnkey계약에서 계약자는 인수가 있기 전까지 현장에서의 책임과 통제에 대한 완전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데 반하여, 플랜트 수출의 턴키 계약에서의 공급자는 구매자의 통제 하에서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시운전 등의 기간동안의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의무만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보통 구매자는 설치와 시운전 등의 기간 동안 또는 그 전에 설비를 인수하게 됨으로 구매자는 그 이후에 설

10) 이태희, 국제계약법-이론과 실무, 전정판(2001), 439면

비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게 되며, 관련된 위험도 모두 구매자의 책임이 된다.¹¹⁾

상기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여 ICC 모델 계약서의 연구는 턴키 계약 중에서도 플랜트와 같은 산업설비에 국한하여서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보통의 건물설치와 토목공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설비 수출에만 국한하여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많은 계약에서 플랜트의 판매뿐만 아니라 시공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ICC모델 계약서를 적용할 시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ICC 에서도 설비의 판매뿐만 아니라 설치 시운전 등의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와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설비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공급자의 부차적인 의무로 분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full turnkey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ICC 모델 계약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않될 것이다.

ICC 모델 계약서 에서는 표제와 전문을 비롯하여 총 6개의 chapter와 37개의 Artic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TITLE & PREAMBLE

CHAPTER 1 GENERAL CLAUSES

CHAPTER 2 SUPPLY OF TECHNICAL DOCUMENTATION,
EQUIPMENT AND SPARE PARTS

CHAPTER 3 ERECTION, TESTING, TAKING OVER AND TRAINING

CHAPTER 4 PRICE, PAYMENT CONDITIONS, BANK GUARANTEES

CHAPTER 5 NON-PERFORMANCE AND IT'S CONSEQUENCES

CHAPTER 6 FINAL CLAUSES

이하에서는 상기의 ICC 모델 계약서와 관련하여 턴키계약방식에 의거한 플

11) ICC, ICC Model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 (ICC Pub. No. 653E), 100page

랜트 수출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어떤 점이 있는 지 알아보고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Ⅲ. 턴키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즈니스적 쟁점

일반적으로 턴키방식은 설계 시공 분리 방식에 비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장점을 나타낸다. 첫 번째가 비용절감이며, 두 번째가 공기단축이고, 세 번째가 설계시공의 책임일원화이다.¹²⁾ 하지만 턴키 계약의 경우 구매자 측에서는 한 공급자와만 거래함에 따른 품질 확보의 한계나 사업관리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공급자 측에서는 장기 거액의 계약에 따른 대금 확보의 불확실과 정치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실제 공급자가 턴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비즈니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실제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일반적인 건설 공사 계약에서 소위 갑을 관계로 인하여 공급자는 구매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놓여 있게 되고 구매자의 요청에 대하여 상당부분 논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근본적인 각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향후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당사자들에게 기본적인 계약서로써 참조되는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각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턴키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상세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계서, 2면 참조

1. 플랜트 수출 계약의 흐름

우선 턴키방식을 통한 플랜트 수출계약의 비즈니스적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플랜트 수출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플랜트 수출계약은 경쟁입찰로 진행되는데, 입찰공고와 사전자격심사 → 입찰참가자의 결정과 초청 → 입찰 → 낙찰과 결정 등의 순서를 거쳐 통상은 정식 서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데 입찰의 공고가 청약의 유인, 입찰이 청약(offer), 낙찰이 승낙(acceptance)에 각각 해당한다.¹³⁾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흐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도출 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의 반영 내용과 향후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본다.

2.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의 부족

턴키 계약의 경우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니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정의 체계화는 향후 계약 변경 등의 발생을 막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주어진 정보가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기획과 사전조사로 인한 예산 책정 및 집행은 턴키 계약이 주로 총액계약으로 이루어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계약 체결 이후 공급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양 당사자는 계획 수립 전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예산 변화 등의 사항까지 고려하는 치밀함을 가져야 한다.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예산의 책정과 집행이 공사계약 시점만을 중심으로 계상되어 이러한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추후의 예산 변동은 모두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 예산의 실행규모는 최종 목적물을 취득하는 시점에서의 실적 공사비 수준이 아니라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의 총액으로 판단됨에 따라 장기 계약인 턴키 계약의 경우 추가비용의 발생 요인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장기에 걸친 공사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 기획 단계에서 미

13) 오원석, 전계서, 173면

14) 김태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사례분석, 22면

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사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정도의 예비 공사비를 마련하여 추가 비용의 증가에 따른 여파를 상쇄시켜 나가는 방법도 대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무리한 계약 체결

턴키 계약은 대부분 대규모의 사업으로 거액의 계약금액인 경우가 다수이며 이를 수주할 경우 공급자에게 상당한 부가가치를 남겨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계와 시공이 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이니 만큼 공급자는 해당계약 수주를 위하여 무리한 경쟁과 입찰을 감수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과도한 출혈은 공급자에게 오히려 승자의 저주¹⁵⁾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시의 득과 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여 효과적인 계약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 시공의 일원화로 인한 설계 오류 수정기회의 생략

턴키 계약방식으로 수출하는 플랜트와 같은 물품은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대표적인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생산과정에서도 자본을 투입하는 구매자의 의견이 수용되며, 구매자가 최종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턴키 계약의 본질적 구조상 구매자의 영향력이 공급자보다 더 우세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계약서 작성 당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조절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설계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및 서비스와 관련된 공급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공급자의 의무수행을 도와주어야 하는 구매자의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턴키 계약의 구조상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유념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항이 필요함을 각 당사자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15) 승자의 저주란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잃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5. 감리자의 대리인 문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매자는 감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감리자는 시공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한다. 즉 감리자는 공급자가 작성한 도면 등을 검사하고 공급자에게 준공증명서와 하자보수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증명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¹⁶⁾ 기본적으로 구매자와 감리자는 본인-대리인의 관계¹⁷⁾를 형성하게 되는데, 감리자가 공사의 효율적인 진행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감독에 대한 책임의 이행을 우선시하게 됨으로써, 과잉 감독을 하거나 사후 감사에 대비하려는 행정 우선적인 사업 관리에 중점을 두는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감리자는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 행위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거나 간섭하게 되는 관행에 익숙해질 우려가 존재한다.¹⁸⁾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대리권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 위임 범위와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부속서류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IV. 턴키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1. 계약의 성질과 특성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턴키 계약 방식은 공급자가 크게 시공책임과 설계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전통적 계약 방식을 비롯한 CM 계약방식에서 구매자가 설계책임을 지고, 공급자는 시공책임만을 부담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표 2). 이에 따라 사전에 공급자와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16) 상체는 Nael G. Bunni, The FIDIC Forms of Contract Third Edition(2005) Chapter 10 참조.

17) '본인'이 직접 업무(또는 사업)를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거나, 효율성이 없어서 '대리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맺고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본인-대리인'의 관계가 형성된다.

18) 김태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계서, 30면

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2. 계약적 책임 관계

전통적 계약방식		턴키 계약 방식	
구매자	공급자	구매자	공급자
설계 책임	시공책임		시공책임
			설계책임

플랜트 수출을 위한 턴키 계약은 비전형계약의 일종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하다. 단순한 건설계약의 경우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지만, 턴키 계약과 같은 EPC계약(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의 경우는 자재의 공급이라는 매매 계약의 측면과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혼합계약(mixed contract)이며 기타 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플랜트 수출을 위한 턴키 계약을 정확히 이해하자면 기술적, 상업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이해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기술부서, 영업부서와 법률부서의 참여가 요구되고, 금융조달이 예상되면 금융부서의 참여도 필요하다.¹⁹⁾ 예를 들어 2009년의 UAE 원전 수출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는데 설계(한전기술), 기기제작(두산중공업), 건설(현대, 삼성 등), 핵연료(한전연료), 운영(한수원), 유지보수(한전KPS)등 설계에서 유주보수 까지 공급체인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²⁰⁾ 또한 선정된 사업자는 건설, 운영, 연료공급, 폐기물 처리 등을 일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턴키방식의 플랜트 수출의 경우 공사기간이 길고, 공급자의 의무가 광범위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할 법률적인 쟁점들 또한 아주 다양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턴키 계약은 강력한 프로젝트의 성능기준을 포함하여 설계, 조달, 시공,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과정을 제공하며, 발주처의 직원에 대한 교육, 노하우의 제공, 특히 관리를 비롯한 다른 프로젝트 관련 기술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구매자와의 단일 계약으로 총액입찰방식이며 대부분의 계약리스크

19) 최준선 외 공저, 로스쿨 국제거래법 (박영사, 2011), 353 ~ 354면

20) 지식경제부, UAE 원전사업 수주 성공 보도 참고자료, 2009.12. 7면

가 공급자에게 할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계약자간의 역할과 책임 설정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인 원칙의 하나로 이렇게 첨예한 이익이 공존하는 경우 용어에 대한 정의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용어 정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²¹⁾

턴키 계약에서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구매자가 설계안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프로젝트의 기준이나 요구조건(Project Criteria or Requirements)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과 성과를 규정하게 된다. 턴키 계약에서는 구매자가 제공한 프로젝트 요구 조건에 대한 정확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과 그에 따른 설계상의 의무를 공급자에게 부여하고 있다.²²⁾ 이와 함께 대지의 물리적 상황에 대한 정보(Site Data)의 검증 및 해석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설계 서비스 관련 리스크를 공급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공급자의 의무를 계약시설의 공급과 관련된 설계 시공 운영,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²³⁾ ICC 모델 계약서에 따르면 구매자는 공급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가능한 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 또는 물을 공급 등과 같은 일반적 사항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원 제공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ICC 모델 계약서 4.8조에서는 구매자의 협동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매자는 건물의 사용 및 운영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허가를 득해야 하며, 공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가 자신의 직원 파견 및 정부의 허가 또는 비자(visa)를 비롯한 수입 허가 등을 원활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공급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오원석, 전게서, 30면

22) FIDIC Silverbook 5.1 디자인 의무(Design Obligation) 참조

23) ICC, ICC 모델 계약서, 4.2조 공급자의 의무 a) 시설의 디자인과 기술적인 부분 b) 시설 배치도의 준비 c) 설비의 공급 d) 기술 서류의 공급 e) 부품과 소모품의 공급 f) 설비의 시운전 및 이행 검사 g) 구매자 직원에 대한 훈련 h) 설비 노하우의 공급

한 공급자가 설계 및 시공을 비롯한 서비스 부분까지 제공하게 되어 계약 관련 리스크가 공급자에게 과중하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공급자의 의무와 더불어 이에 협력해야 하는 구매자의 의무까지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일방 당사자가 모든 계약상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건설계약상 구매자의 요구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공급자의 입장을 고려하였을 때, 구매자의 협동 의무 뿐만 아니라 공급자를 구매자의 횡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련의 규정의 제정을 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서비스 기준

턴키 계약에서 서비스의 궁극적인 기준은 목적에 대한 적합성(Fitness for Purpose)에 있어야 한다.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계약 목적물인 플랜트가 완성되고 난 후 공급자는 시운전을 비롯하여 실제로 상품을 올바르게 생산할 수 있는 지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사전에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품질 기준과 성능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FIDIC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 빌드계약과 턴키 계약에서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판례법에 의하면, 턴키 계약자는 목적에 대한 적합성 기준에 맞는 구조물을 제공하여야 하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ICC 모델 계약서 또한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⁴⁾ 따라서 설치된 설비는 일반적인 설비가 가져야 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뿐만 아니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성능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기준은 성능 보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데 성능 보증이란 완성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 지에 대한 사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능 보증은 생산품의 품질에 한정되지 않고 완성된 플랜트의 생산능력, 원자재 사용량, 기기의 성능 등 다각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ICC 모델 계약서에서도 4.4조에

24) Huse, J.A., Understanding and Negotiating Turnkey and EPC Contracts, Thomson Reuters (Legal) Limited, 1997, p.19 및 p.148 참조

서 이러한 성능보증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전에 명기된 기술 조건과 일치하고 이행검사까지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야 공급자의 성능보증에 대한 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5조에서 성능 보증과 관련하여 구매자의 의무를 따로 규정하여 구매자가 일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 공급자의 성능보증을 담보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ICC 모델계약서 4.5조를 살펴보면, 구매자는 공급자가 규정한 절차와 지시사항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생산과 운영에 사용된 재료들은 공급자가 제시한 조건과 부합해야 하고 논쟁이 있을 경우 구매자는 견본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대한 검사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시설의 경영, 운영 및 유지는 문서화된 지시사항과 공급자가 제시하는 절차 및 교육기간동안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는 상기의 이러한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준수사항이 완전하게 이행되었을 경우에 공급자는 자신이 서면으로 제시한 성능보증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급자의 의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4. 계약 변경

계약 변경은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이 변화될 수 있는 원인이 되어 향후에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은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다. 턴키 계약은 본래 계약금액이 큰 금액으로써 계약이 변경될 경우에 그 영향도 다른 계약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으로 인해 설계 시점에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경제적인 변화가 계약 변경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변화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설계당시에 본래 계약상 누락이나 오류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ICC 모델 계약서는 5조에서 비 실질적 변경과 구매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공급자는 설비를 구매자가 인수하기 전까지 계약시설에 대한 비실질적인 변경 또는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경의 경우 모두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 실질 적인 변경은 사전에 계획된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해당 작업으로 인한 시간의 소요와 비용의 증대가 있을 경우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반면에 구매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일 경우에는 구매자가 해당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구매자는 인수 전의 어느 때라도 계약 합의 시점에 고려되지 않았던 계약 시설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계약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추가되는 비용과 일정 변경 등 가능한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비용 추계서 또는 일정 변경표 등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변경되는 사항에 맞추어 진행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구매자는 현재까지 공급자가 소요한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5. 양도와 하도급

공급자는 자신의 의무 중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급자는 구매자의 승인 없이는 계약의 전부 양도나 일부의 하도급 계약을 하지 못한다. 또한 공급자가 제 3자에게 계약사항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하도급자의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완전한 책임을 부담한다. 즉 공급자는 하도급자가 이행하는 공사가 계약서상 적용되는 계약 조건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해야 한다. ICC 모델 계약서에서도 상기의 내용을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내용은 상기의 내용과 일치한다.

6. 기술 자료

턴키계약은 공사의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및 서비스 또는 노하우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계약으로 과정상 기술적 노하우의 제공이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해당 기술 노하우의 보안 문제는 공급자를 비롯한 각 당사자에게 침예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의 각 당사자들을 계약 과정 상 오고가는 기술적인 자료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때로 기술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급자의 사업의 존폐여부에도 관계되는 사항일 수도 있으므로 기술적 자료의 범위와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제 9조에서 기술 자료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는 공급자가 일정표 또는 부속서류에서 기재되어 있는 바에 따라 기술 자료들을 적시에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구매자에게 제공된 기술 자료에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약 오류나 누락의 원인이 구매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7. 포장과 표기

턴키 계약은 계약의 특성상 공급자와 구매자가 물리적으로 멀리 존재하므로 해당 설비나 부품의 이동거리도 타 계약에 비해 긴 편에 속한다. 공급자는 장거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을 하여 해당 설비를 비롯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포장과 상자에 선적항, 도착항, 발송인, 수취인, 총량, 순량, 포장 또는 상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성능과 품질의 손상 없이 현장으로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포장은 불가피 하며, 운송 및 보관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화물의 표기는 운송되는 화물을 수취인이 정확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요하며, 아울러 하역, 화물 반출입작업, 정리 및 보관을 할 때 취급의 판단 근거가 된다.²⁵⁾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포장에 관하여 공급자는 계약 시설을 목적지에서 저장하게 될 때의 예측 가능한 조건과 사전에 합의된 운송수단에 적합한 보통의 포장을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자가 책임지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통의 포장까지이며, 특수 포장을 원할 경우 이는 구매자의 부담이 된다.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물품의 표기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각 물품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계약 스케줄 E(schedule E)를 통하여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5) 한국수출입은행, 영문국제계약해설 개정증보판, 2006, 422~423면

8. 대리인 선임과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각 당사자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당사자는 사업 대표자와 현장 대표자를 선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임명된 후 해당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사업대표자는 인수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통의 사항을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그리고 현장 대표자는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현장에서 이행되는 계약 활동에 관하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사업 대표자와 현장대표자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이므로 당사자를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대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리인의 역할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겠으나 대리인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결정권만을 가질 뿐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의 결정은 각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계약서에 정해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수정, 해지, 또는 준공 증명서 등의 작성권한은 각 당사자가 하도록 유보하기도 한다.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대표자들에 대한 규정을 비롯하여 현장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된 의무와 책임을 구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15조에서 현장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매자는 작업여건과 현장에서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급자는 공사의 시작부터 인수시점까지의 기간동안 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공급자의 현장 대표자는 설치, 가동 및 운영 검사 동안의 시간과 운영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살펴보았을 때, ICC 모델 계약서에서 현장 관리에 대한 주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감독하고, 자신의 의무 이행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하게 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는 ICC에서 본 계약서의 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본 계약서의 적용이 full turnkey가 아닌 플랜트 수출의 턴키 계약에만 한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규정이라 하겠다. 플랜트 수출의 턴키 계약에서는 현장 관리에 대하여도 공급자가 아닌 구매자의 의무를 보다 강조하여 공급자의 의무를 경

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V. 결 론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턴키 계약 방식을 이용한 플랜트 수출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ICC 모델 계약서를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턴키 방식의 핵심은 도급자, 즉 건설회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구매자의 측면에서, 발주 단계에는 경쟁을 통해 합리적 시공 및 다양한 대안의 유도가 가능하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고, 시공, 설계 및 다른 사업 요소들에 필요한 발주자의 조정 및 관리가 최소화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설계와 시공이 통합되기 때문에 전체 설계 시공 기간은 상당부분 절약될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시공에 관한 경제성을 설계 단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공사비 절약 및 공사 기간 단축의 이점이 있다.²⁶⁾ 하지만 장기간의 공사기간과 대규모의 사업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완전한 계약 수행을 위해서는 비즈니스적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모델 계약서의 유용성은 턴키 계약만이 가지는 비즈니스적 법률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가 그 쟁점사항이 되는데, 턴키 계약은 그 독특한 성질상 다른 매매 계약에 비하여, 계약자간의 역할과 책임설정, 서비스 변경 및 계약 변경, 양도와 하도급, 공급자의 영업 기밀이나 기술 자료의 제공, 포장 및 표기, 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ICC 모델 계약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턴키 계약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턴키 계약상 쟁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논점에 대하여 모두 다루고자 하였으나, 다루지 못한 논점에 대하여는 향후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6) 김상길, 건축 생산 시스템 중 발주 방식과 계약에 관한 논의, 2005 여름, 건축과 사회 47~48면

참 고 문 헌

- 김상길, “건축 생산 시스템 중 발주 방식과 계약에 관한 논의”, 「건축과 사회」, 2005.
- 김재성, “유럽법제에서 형평성 원칙에 따른 표준계약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소고”,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5.
- 김태황,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사례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9. 5.
- 최명국, “FIDIC의 DBO 프로젝트용 표준계약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5.
- 최명국, “FIDIC의 EPC/Turnkey 프로젝트용 표준약관에 관한 研究”,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8.
- 오원석, 최신 국제비즈니스계약, 삼영사, 2011.
- 이춘삼, 최신 무역관계법, 2008.
- 이태희,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 전경판 2001.
- 지식경제부, UAE 원전사업 수주 성공 보도 참고자료, 2009.12.
- 최준선 외 공저, 로스쿨 국제거래법, 박영사, 2011.
- 한국수출입은행 편집부, 영문국제계약해설 개정증보판, 2006.
- Huse, J.A., Understanding and Negotiating Turnkey and EPC Contracts, Thomson Reuters (Legal) Limited, 1997.
- ICC, ICC Model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 (ICC Pub. No. 653E).
- Nael G. Bunni, The FIDIC Forms of Contract Third Edition(2005), 2005.
- <http://www1.fidic.org/resources/contracts>

ABSTRACT

A Study on Some Issues of Business and Law in relation to ICC Model Turnkey Contract

- Focusing on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Kim, Kyoung Ok

Kim, Dae Hwan

This Work intends to study on some issues of business and law in relation to Contract for Turnkey Base System. The continuing advance of export system of the plant with the importanc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emphasizes the need for business and legal approach to uniform international model contract.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by ICC covers a particular category of turnkey contract, i.e. contracts for the supply of a plant or production line to be erected within facilities which already exist or which are constructed by the purchaser. Furthermore, the application of the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leaves much to be desired from a business and legal point of view.

Therefore, there would appear to be room for compromise between the supplier and purchaser in respect to make a cont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Key Words : Turnkey Contract, Export of Plant,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